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세무1과	1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세무1과	4

(2012. 3. 5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2월 21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2년 2월 23일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,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장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자로 「지방세법」을 전문화·체계화하기 위하여 3개의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, 조항의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

< 개정된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2조(지급대상) 제1항제4호에서 2010. 3. 31(법률 제10219호)로 「지방세법」이 「지방세기본법」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인 “ 「지방세법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” 을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한” 으로 근거조항을 변경함
- (2) 안 제8조(환수) 제1항제4호에서 2010. 9. 20(대통령령 제22394호)로 「지방세법시행령」이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인 “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39조” 를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5조” 로 근거조항을 변경함

< 검토의견 >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이 3개의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분법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, 「지방세기본법」과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변경된 근거법령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,

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내용이 없고, 우리 구 조례 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